

< 2026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II - 교재순 >

구민회 관세사

- ★ 2026년 2월27일 개정 시행령(개정사항 I 와 연동하면서 보세요)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으로 표시함.

1. 구민회 관세법 - 과세편

● 교재 82페이지★ - 생산지원의 범위 명확화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④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을 제외한다

● 교재 142페이지 ★★★ - 덤핑 잠정조치 결정기간 연장확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③ 잠정조치여부 결정 재정부경제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잠정조치)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잠정조치여부 결정 재정부경제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잠정조치)에 의한 조치의 필요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

● **교재 151페이지 ★★ - 덤핑 재심사 결정기간 연장근거마련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③ 재심사 결정 및 통지</p> <p>재정경제부장은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①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p> <p>③-1 재심사 결정기간 연장 - 신설</p>	<p>③-1 재심사 결정기간 연장 - 신설</p> <p>상기 ③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③에 따른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①에 따라 요청받은 재심사의 대상이 아닌 다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2. 제59조제1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된 물품

● **교재 198페이지 ★★★ - 편익관세대상국가 코모로 삭제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4. 아프리카 - 코모로 · 에디오피아 · 소말리아	4. 아프리카 - 에디오피아 · 소말리아

● **교재 336페이지 ★★★ - 지정공장 지정기간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② 지정기간</p> <p>①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사·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신할 수 있다.</p>	<p>② 지정기간</p> <p>①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사·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의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p>

● **교재 391페이지 ★★ - 고액체납자명단공개제외 기준 개선 (개정)**

● 개정 전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text{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 = \frac{B}{A+B}$$

A :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액

B :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액

● 개정 후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text{체납액 납부비율} = \frac{B + C}{A + B}$$

A: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체납액

B: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C: 명단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법 제116조의2제4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날 까지 해당 명단공개 대상예정자가 납부한 체납액

2. 구민회 관세법 - 통관편

● 교재 13페이지 ★ - 명칭 변경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2) 5년간 보관</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p> <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p> <p>㉡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p> <p>③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p> <p>㉣ 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p> <p>㉤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p> <p>㉥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p>	<p>2) 5년간 보관</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존승객예약자료는 5년간 보존할 수 있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려고 하였던 자로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p> <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p> <p>㉡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p> <p>③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장이 수집한 정보 등에 근거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p> <p>㉢ 법 제234조를 위반하여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p> <p>㉣ 법 제24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p> <p>㉤ 마약류 등</p> <p>㉥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전자총격기 및 석궁</p>

● **교재 142페이지 ★ - 보세운송 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및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①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사·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와 물품의 적재지·생산지 또는 제조지 4.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 	<p>①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 법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7, 9 및 10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효율적인 하역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세관의 감사·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송수단의 종류 및 번호 2. 운송통로와 목적지 3. 화물상환증,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적재화물목록번호,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4.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5. 품명·규격·중량 및 가격 6. 운송기간 7. 화주의 명칭(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 성명 8.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유형·상호·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9. 담보의 종류 및 담보 금액 10. 보세운송 사유 11. 제189조제3호에 따른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재 170페이지 ★ - 우편물 화주 명확화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 통보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통관보류요청 또는 세관장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화주 나. 물품발송인 다. 물품수신인</p> <p>㉕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㉖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p>	<p>* 통보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통관보류요청 또는 세관장직권에 의한 통관보류)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 나. 물품발송인 다. 물품수신인</p> <p>㉕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㉖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p>

● **교재 171페이지 ★ - 우편물 화주 명확화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⑤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 요청</p> <p>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소명자료제출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화주가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통관보류 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해제 요청</p> <p>④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의 소명자료제출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 **교재 172페이지 ★ - 우편물 화주 명확화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② 채취요청</p> <p>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통관 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p>	<p>② 채취요청</p> <p>세관장은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지식재산권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통관 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p>

● **교재 264페이지 ★★★ - 마약류 등 정보제출요구 (변경 및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관세청장은 상기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p> <p>2. 외교부장관 : 국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3. 법무부장관 :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및 처분내역</p> <p>4. 검찰총장 : 다음의 정보 가.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의 성명·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관세청장은 상기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제3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와 접속기기 및 조회일시</p> <p>2. 외교부장관: 국외에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로 최근 10년간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사람으로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의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3. 법무부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및 처분내역</p> <p>4. 검찰총장: 다음의 정보 가.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나.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유죄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5. 국방부장관: 마약류등의 밀수·유통·투약·밀조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국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p> <p>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사를 의뢰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다)·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p>